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은 했는데...

지난달 12일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됐다. 배출권의 단위가 되는 1KAU(Korea Allowance Unit) 당 가격은 개정 첫날 7,860원으로 시작, 8,640원으로 9.92% 상승하며 마무리됐다. 거래량도 1,190톤에 이르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개장 1주일만에 9,610원으로 상승했으나 거래량은 100톤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9,930원까지 상승했으나, 6일 연속 거래량은 '0'이었다.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시장이 형성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어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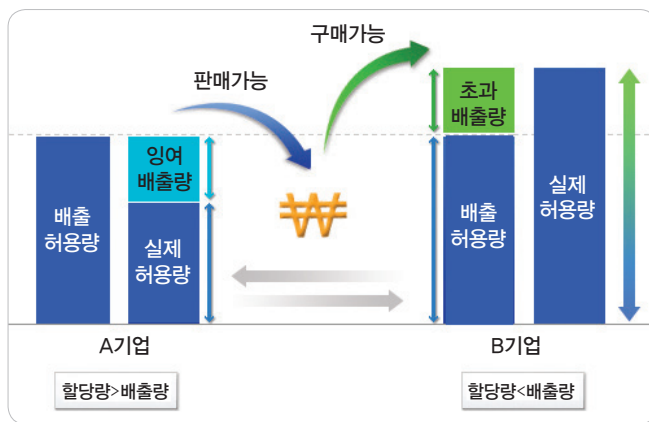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중 절반 가까운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 정부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게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인 243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주무관청(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주무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거의 대부분 할당량 부족...거래시장 자체 형성되지 않아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총 525개 중 243개 업체 이의신청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크게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 조정과 할당기준에 대한 변경 요청으로 구분된다. 먼저 할당신청이 누락됐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tCO<sub>2</sub>-e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3,000tCO<sub>2</sub>-eq 미만)이 추가반영을 요청해 왔다.



배출권거래제 기본 개념도.

아울러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해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도 상당수 들어왔다. 또한,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에 감축역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업종별 할당량 확대 또는 신증설이 없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한 배출권 증량 요청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박문민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배출권 할당량은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관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연구계·학계 전문가 중 3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2월 초까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조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재화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도 부가세를 내야하고, 이렇게 되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